

| | |
|--|---|
| 핵심설명서  | <p>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p> |
|--|---|

화재보험 상품설명서

| | | | | | |
|---|---|---|--|--|---|
| 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 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 예금자보호 최저보증 보험금만 보호 [1인당 최고 5천만원] | 보장성보험 [사망, 상해, 질병 등]  | 실손형 담보 [중복가입 부적절] 비례 보상 |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 이내 |
| ↑ 보호아이콘 | | ↑ 비보호아이콘 ↑ | | | |

//예금자보호 아이콘 : 1)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 보호아이콘 2) 법인인경우 : 비보호 아이콘

000님을 위한 상품설명서

본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 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고,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문구 가변 //

// 1)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2)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실제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므로 중복가입 경우에는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 한국지점

MSIK-UF2-R001
2024년 07월 24일

가.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 : 미쓰이쓰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 한국지점
- 모집자 : 영업1팀, 김철수 (연락처 02-123-4567)
- 기본계약 보험기간 : 2011. 3. 1. 부터 2012. 3. 1. 까지
- 보험상품명 : 화재보험
- 보험목적물 : 서울시 종로구 123-456 그런빌딩 5층 등
- 보험계약관계자
 - 보험계약자 : 홍길동
 - 피보험자 : 홍길동 아들
- 보험료 : 987.654.321 원 (납입방법 : 일시납)
- 보험계약 주요 체결 내용

| 구분 | | 지급 사유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
| 기본 계약 | 재물손해 |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피난손해 | 100원 | 257367 |
| 선택 계약 | 도난위험보장 | 보험의 목적에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훼손 | KRW 200,000 | - |
| | 전기위험보장 | 보험의 목적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사고로 발생한 손해(공제금액:1만원) | | 해당없음 |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

[보험계약자의 권리]

① 보험계약 청약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1)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2)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한국지점(☎ 02-3702-5800)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7층 (07326)
 미쓰이쓰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 한국지점 (전화:3702-5800)

②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의무]

①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계약의 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②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등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③ 상품별 특이사항

[예시] 상품별 특이사항

□ 화재보험 및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재산종합보험 등)

- *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 (이하 '임차인등')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라.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다수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보장의 경우,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확장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물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목적물의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전부보상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일정조건 충족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 이사 등으로 계약상의 목적물 소재지와 실제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증권에 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재물보험 등의 일부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에 등에 관한 사항]

- 화재손해 및 붕괴 등의 손해와 임차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비례보상합니다.

| | |
|---|---|
| 건물, 가재도구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경우 보상액 | 재고자산, 임차자배상책임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경우 보상액 |
| 손해액 X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손해액 X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

< 재물보험 등의 지급보험금 산출 예시 >

| 보험가입 금액 | 보험 가액 | 손해액 | 건물, 가재도구 지급보험금 | 재고자산, 임차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지급보험금 |
|---------|---------|---------|---|------------------------------|
| 4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 × (400/800)=500만원 단, 보험가입금액 한도 이므로 400만원 지급 | 1,000 × (400/1000) =400만원 |
| 4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100 × (400/800)=50만원 | 100 × (400/1000)=40만원 |

[재물보험 다수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에 등에 관한 사항(임차자·임대인 중복가입)]

-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보험금을 다른 계약에 우선하여 이 계약에서 지급합니다.
- 또한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계약에서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주요사례 안내>

* 일부보험 가입시 원상복구 금액의 일부보상 사례
 3층 빌딩(총당 330㎡)을 신축(신축가 6억원) 후 전체를 사무실로 사용을 목적으로 개업하여 곧바로 화재보험(건물 보험 가입금액, 3억원)을 가입하였다. 1개월 지난 시점에 1층 일부 공간 회의실에서 원인모를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조기 수습을 한 결과로 다행히 회의실 공간만 태우고 진화되었다.

화재로 인한 건물피해 수리복구 금액 2천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전체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이는 신축가 대비 50%의 수준으로 보험에 가입한 바, 비례보상의 원칙 및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식에 따라 비례보상을 적용한 보험금이 보상됩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아래의 유의사항은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지급에 관한 약관내용의 일부를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화재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4. 화재에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전기위험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는 특약 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2) 도난위험보장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 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줌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3) 전기위험보장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마.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① 예금자보호제도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계약자가,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②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당사 한국지점(02-3702-58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s-ins.co.kr)** 또는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①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입니다.

- ▶ 보험회사는 서면, 녹취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계약전 알릴사항을 수령합니다.
- ▶ 보험회사는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입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모집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의 전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③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④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⑥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사항**1.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보험금 청구가 곤란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대리청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방법

가입하신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3702 - 5847

⑦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망사실(사망일자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받은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 (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⑧ 기타 유의사항

□ 교차모집 관련 유의사항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표1 : 보험상품의 특성정보 아이콘 설명」

| 아이콘 | 설명 |
|---|---|
|  | <p>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 합산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p> |
|  | <p>예금자 비보호 상품: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음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 합산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p> |
|  | <p>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 상품</p> |
|  | <p>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상품: 다수 상품을 중복 가입 하더라도 가입 보험회사 별로 보험금을 비례 · 분담하여 보상</p> |
|  | <p>청약일부터 30일 이내(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p> |